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2 및 동법
시행령 제15조의2에서는 산업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
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
되어 있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지정신청서, 지정서 서식을
규정(안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산업교육센터의 지정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영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.
- ② 영 제1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“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는 영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한다.
- ③ 영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 신 설 ></u>	<u>제6조(산업교육센터의 지정)</u> ①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<u>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.</u> ② 영 제15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른 “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는 영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로 한다. ③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.

산업교육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6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
	대표자	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(e-mail) 주소
	주소	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 서류	1.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2. 정관 또는 내부 규정 3.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4. 산업교육 관련 사업 추진실적 5. 산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-------	---	-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제 호

산업교육센터 지정서

1. 기관명 :
2. 대표 :
3. 주소 :

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교육부장관

직인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313